

제349회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3월2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계속)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2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의 제1소위와 제3소위에서 논의했던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 국회운영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서 관련법에 반영되어 시행이 되고 있기도 하며 또 제2소위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논의해야 할 그런 내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제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권한 개혁 의제를 논의하던 제1소위원회와 국회운영제도 개선 의제

를 논의하던 제3소위원회를 통합해서 제2소위원회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논의하던 제2소위원회를 제1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제1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위원님, 제2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이현승 위원님이 각각 맡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을 하되 더불어민주당에 4인, 자유한국당에 3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및 정의당에 각각 1인씩을 배분하고, 제2소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을 하되 더불어민주당에 3인, 자유한국당에 2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각각 1인씩을 배분하기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위원명단은 교섭단체에서 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해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소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 제1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게 된 유승희입니다. 우선 나눠드린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349회 국회 제7차 정발특위 심사자료에 보면 새로 2기가 시작되는 정발특위 이전에 제1기에 제1소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죽 있었습니다. 2소위에서 현재 합의가 된 안들이 지금 안행위 소위에서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통과된 것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단, 정발특위에서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 국회운영제도 개선에 관련된 법안 중의 상당 부분은 그래도 개정 법률로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의결이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정당법,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는 입법권한을 강화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좀 더 명백히 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만 되어 왔고 제대로 개정이 되지 못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2기 이명수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진행되는 정발특위에서 선거법 관련 법안이 정말 좋은 법으로 다시 개정되는 그런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입법권한을 좀 더 명백하게 강화하고 또 국민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장님이 계시는 1소위원회에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승 제2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晷 위원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을 맡게 된 이현승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책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제2소위에서는 국회의원 권한 개혁 및 국회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것을 다룰 예정인데요. 보니까 전부 일곱 분의 위원님이 제2소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인데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과 잘 뜻을 합쳐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1소위보다 2소위 자료가 훨씬 두껍네요. 그런데 위원은 10대 7로서 조금 숫자가 적지만 저희들이 그만큼 알차게 심의를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소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현승 소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개정과 또 최근의 여러 가지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10시13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쪽과 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1소위원회 논의 주제로 공직선거법 관련 14개 의제와 정치자금법 관련 4개 의제, 정당법 관련 5개 의제 등 총 23개 의제를, 제2소위원회 논의 주제로 국회의원 권한 개혁 관련 4개 의제와 국회운영제도 개선 관련 14개 의제 등 총 18개 의제를 선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특위가 2016년 7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논의했던 의제 중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들뿐만 아니라 작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도 함께 포함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와 함께 선거제도가 개편되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특위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6년 7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특위 논의 결과와 세부 활동 경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4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전번 우리 제1소위에서 의논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마이크 사용 제한 문제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했을 때 마이크를 만약에 본인이 갖고 다니는 마이크가 아니고 경로당이나 또는 복지관 이런 데 행사에 갔을 때 마이크 주는 것은 인사나 소개만 하는 정도의 마이크인데 그것마저도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포함돼서 그것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족쇄에 잡히고, 끝나고 나면 이런 일이 많아서 이것을 전번에 개정하자고 서로 말씀을 하다가 결론에는 못 미쳤습니다마는 다음에 의논하자고 했거든요. 이 문제까지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선거 때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선거 규제와 관련해서 정말 민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기왕에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한번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또 다른 말씀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저도 들어 보고 상의 좀 드려야 될 문제인데,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회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어떤 부패와 연루돼서 사법처리를 받거나 의원직을 박탈당했을 때 그 소속 정당이 같이 연대책임을 지는 이런 스스로의,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를 규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당의 어떤 부패지수나, 역으로 생각하면 청렴지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패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이것을 국고지원금하고 연동하는 방안을 좀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렴도가 높은 정당에 대해서는 의석수에 비례하는 부분과 별개로 국고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더 주고, 또 실제로 의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부패지수가 높았을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그만큼에 비례해서 삭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국회 청문회가 사실 진실을 밝히는 어떤 장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유명무실하고 무력화됐다는 그런 국민적인 비판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증언·감정이나 국정조사 또 여기에 대한 청문회를 실질화시키는 여러 가지 법안들, 개정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운영위에서 원만하게 다 수용되고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의 권한 강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불권리를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국회 청문회를 어떻게 실질화시키고 그 부분이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장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럼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치발전특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가 국민들한테 일을 안 한다고 비판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법률안 처리 문제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은 실질적으로 사실 그 법안이 폐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기 때까지 이렇게, 동료 의원이 낸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처리를 안 하고 그냥 묵혀 두었다가 그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폐기 안 하고 있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건데, 폐기도 사실 처리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소위나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내신 법안, 물론 정부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도저히 통과될 가망성이 없는 법안이다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20대 초에 냈는데 20대 임기 말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다가 20대 국회 종료되면서 폐기 처리할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 봐서 이 부분은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이다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시키는, 그렇게 해서 국

회의 법안 처리율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태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의원 개별 책임 이외에 정당의 연대책임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채택한다면 1소위 소관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청문회 제도하고 법안 처리 제도개선은 아마 채택이 된다면 2소위 소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하는 데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제 채택과 관련해서.

추후에도 언제든지 추가로 제기를 하거나 또 우리 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의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 이명수 예,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사실은 지난번 1기 때—1기, 2기 편의상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사전선거운동 금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폐지론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규제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식민지 지배했던 일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 제도 자체가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제도 자체는 지금 거의 무력화되고 있고, 일본의 경찰이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우리가 치안업무를 볼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도개선에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제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출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권한을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호소하면 국민들의 반응은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인데 왜 법

을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기 때 경험한 바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입법 권한, 정당한 입법 권한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제도의 어떻게 보면 족쇄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뜻을 함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과거부터 정치 관련 NGO나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내용도 아마 우리 특위에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는 어차피 유승희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1소위에서 한번 잘 다루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 부분의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발특위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일단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발특위의 주요 의제로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하는 것에는 공감할 하는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승희 위원 계속 논의를 하지만 특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예.

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명백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명수 지금?

○유승희 위원 중요한 의제다라고 하는 얘기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이명수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금 유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덕흠 위원** 먼저 1기라고 말씀하셨는데 1기 때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완화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좀 통과된 것도 있고, 아까 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확정기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가셔도 우리가 알리고 있고, 버스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확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지지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맞게끔 확정기를 사용해서 내가 누구고 이 행사를 축하한다 이런 정도로 가야지, 여기서 지지 선언을 하는 말로 이어지면 상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행사 자체가 잘못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논의를 하다가 통과시킬 법안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지금 사전선거운동 뭐 풀어야지요. 풀고 전체적으로 다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도 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기본적으로 금전을 제외한 다른 선거운동 방식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가능한 풀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는 아마 소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 약간 부연설명이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지금 불합리하나 하면 현행법으로는 마이크 잡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호소하건 안 하건간에 마이크를 잡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서 악의를 가지고 마이크 잡은 것 자체를 고발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이런 손마이크라든지 무선마이크가 있기 전에는 확정기로 선거운동을 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법 자체는 아웃 오브 데이트(out of date)……

그런데 선관위원회에서조차도 조금 더 합리적

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도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쓸데없는 논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관위원회에서도 좀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도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1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쟁점도 있고 오늘 두 번째 안전이라는 게 우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다 폭넓게 열어 놓고 주제는 다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예, 그러시지요.

자, 지금 말씀하신……

윤소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강병원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대신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의 세밀한 부분을 소위에서 정확히 의제화시키고요. 마찬가지로 박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을 의제화해서 거기서 밀도 있게 하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실제로 특위 무용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우리들이 결정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얼마만큼 내용성을 확보해서 여타의 국회 정치개혁을 하는 데 밑바탕 내지는 밑돌이 되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개혁에 관해서는 단순히 권력구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선거제도라든가 정당법이라든가 이런 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오히려 정치발전특위 자체의 위상을 위원장님께서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해 봤자 당대표님들께서 만나 가지고 뭐 다 이야기해 버리고 대선주자들이 다 이야기해 버리고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형식과 내용을 정치발전특위에서 한 부분들이 정확히 국회나 각 당에 반영돼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특위의 활동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우

리 특위 활동 내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특위 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정당은 물론 우리 국회에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직접 연결되는,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특위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그 성과가 뭐냐, 내용이 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바로 특위 위원 자신들한테 여러 가지 귀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제내용을 잘 정리해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정국이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특위의 활동 시한이 우리가 재촉해야 될 그럴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일정을 우리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위 활동에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강 병 원	박 덕 흠	박 용 진	박 재 호
여 상 규	원 혜 영	유 승 희	윤 소 하
이 명 수	이 철 희	이 태 규	이 현 승
전 희 경	홍 철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천 우 정